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표 시 문 구	표 시 방 법
1. 음반·음악영상물 판매업소	19세 미만 구입 불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mm 이상, 다른 한쪽이 100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2. 비디오물 판매업소		
3. 만화 판매업소		
4.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 판매업소		
5. 비디오물 대여업소	19세 미만 대여 불가	
6. 만화 대여업소		
7.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 대여업소		

비고: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